

의안번호	2210797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5.8.4.
추계번호	25D3172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4항 (국립묘지별 안 장 대상자)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도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제4항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의 경우,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순국선열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도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,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묘에 안장하는 애국지사의 증가로 추가재정

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1기당 안장비용은 묘의 경우 223만원(토지비용 불포함), 봉안시설의 경우 284만원(토지비용 포함)으로 토지비용을 포함할 경우, 묘지 안장비용이 봉안시설 안장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

[표 1] 1기당 안장비용 비교

(단위: 원)

	위패	유골함	묘지조성단가	합계	비고
묘	131,766	41,000	2,060,000	2,232,766	토지비용 불포함
봉안시설	131,766	45,250	2,664,000	2,841,016	토지비용 포함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라 봉안시설 대신 묘에 안장하는 애국지사의 수를 추정하기 곤란함

- 2025년 5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등록자수는 10,134명이며, 이 중 애국지사는 9,064명임
- 2025년 5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안장건수는 5,106기인데, 국립묘지 안장 관리시스템 상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, 순국선열로 분류·관리하고 있지 않아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안장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

[표 2] 독립유공자 안장건수(2025.5.)

(단위: 건)

구 분		총계	서울	대전	제주	신암
묘 역		4,342	232	4,038	24	48
충혼당		274	254	17	3	-
위 패	순국선열	125	104	21	0	-
	애국지사	365	255	109	1	-
계		5,106	845	4,185	28	48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또한,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 수나 그 배우자의 유골 유무도 확인할 수 없어,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묘에 안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